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6월 24일

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이 개정(2020.4.7.공포, 2020.5.27.시행)에 따라,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「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의원 외부강의 신고대상·신고기한 변경(안 제13조 제2항)
 - 외부강의등을 →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
 - 미리 →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
- 외부강의 신고대상·신고기한 명확화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(제13조 제3항, 제4항)
 - (제13조 제3항) 사례금 등을 알 수 없는 경우, 해당사항 제외 신고 후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
 - (제13조 제4항)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,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, 제30608호)

○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○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
○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외부강의등을”을 “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”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외부강의등을”을 “의원의 외부강의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은 <u>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<u>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	<p>제13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</u> ----- <u>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</u> ----- <u>신고</u> <u>해야</u> --. ----- ----- 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의원의 외부강의등을</u> 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
제1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4. 7.>

③ 삭제 <2020. 4. 7.>

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
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.

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